



함께만드는 복지
www.bokjiro.go.kr

출산친화적 문화조성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



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


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(유산·사산 포함)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

사업개요

1. 지원대상

- 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(유산·사산 포함)한 여성장애인(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)
 -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
 -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- ➔ 다만, 인공 임신중절 수술(「모자보건법」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)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
- ➔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
2. 지급방법

- ➔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(지원금액) 출산(유산·사산 포함)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

3. 신청방법

- ➔ 방문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
- ➔ 온라인
 - (신규) '복지로'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
 - (기존)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(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)

(방문) 신청 절차

1. 지원신청

- 읍/면/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.

2. 자격요건 확인

- 읍/면/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.

3. 대상자 결정(시/군/구)

- 특별자치시/시/군/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
4. 출산비용지급(시/군/구)

- 특별자치시/시/군/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합니다.



(복지로) 온라인 신청 절차('19. 11. 27.부터 시행)

1. 복지로 사이트(<http://www.bokjiro.go.kr>) 접속

2. '온라인신청'의 복지서비스

⇒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선택

3. 공인인증서 입력 후 서비스 신청(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)

- (가족이 대리 신청 시) 대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.



* 문의사항은 **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** 또는 **읍/면/동 주민센터**에 문의 바랍니다.



* 시각장애인인 경우 **점자산모수첩**도 함께 나누어드립니다.